

앞면반사기의 설치기준 (제49조제3항제3호 관련)

1. 설치

가. 앞면반사기는 IA, IB 형식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나. 앞면반사기가 추가로 설치된 경우에는 의무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설치위치

가. 너비

1) 앞면반사기의 조명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2) 피견인자동차인 경우 등화의 조명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150밀리미터 이내일 것

3) 승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 기준축 방향에서 앞면반사기의 조명면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높이

앞면반사기의 조명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 1,5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길이

자동차의 앞면에 설치할 것

3. 관측각도

가. 수평각

1) 앞면반사기의 조명면은 내측 30도·외측 3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 내측은 1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하여야 한다.

2) 1)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앞면반사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관측각도를 만족할 것

나. 수직각

앞면반사기의 조명면은 상측 10도·하측 1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하측 5도 이내에서 관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추가적인 요구사항

앞면반사기의 조명면은 자동차 앞면에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의 발광면을 공유할 수 있다.

